

(재)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57
----------	------

2025. 10. 17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30. 광양시장
- 나. 회부 일자: 2025. 9. 30. 회부
- 다. 상정 일자: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10. 17.) 상정,
“원안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(재)백운장학회 2026년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- 재단 기본재산 증대와 고등학생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(재)백운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(재)백운장학회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출연

(단위: 천원)

합계	장학사업 추진 (기본재산증식)	고등학생 장학금
350,000	150,000	200,000

* 일반회계 지급하던 고등학교 장학금을 '16년부터 백운장학회에 지정기탁(출연)하여 지급

○ 연도별 출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'26년 (계획)	'25년	'24년	'23년	'22년	'21년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년
계	350	350	350	350	305	305	307	425	1,150	435	505
기본재산 증식	150	150	150	150	105	105	107	105	830*	105	175
고등학생 장학금	200	200	200	200	200	200	200	320	320	330	330

* 2018년 기본재산증식 내역 : 시금고 협력사업 105백만원,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725백만원

3. 검토 의견

- 이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에 따라 (재)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으로 2026년 본예산에 장학사업 추진(기본재산 증식) 1억 5천만 원과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 등 3억 5천만 원을 백운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 결과,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,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이 없으며,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백운장학회의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 - 아울러,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시로 발굴·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장학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6명)

☞ 부대의견: 장학금 외 목적사업은 일반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
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(재)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

[재]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

1. 제안이유(필요성)

- 재단 목적사업 추진과 고등학생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(재)백운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(재)백운장학회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출연

(단위: 천원)

계	장학사업 추진(기본재산 증식)	고등학생 장학금
350,000	150,000	200,000

* 일반회계 지급하던 고등학교 장학금을 '16년부터 백운장학회에 지정 기탁(출연)하여 지급

- 연도별 출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'26년 (계획)	'25년	'24년	'23년	'22년	'21년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년
계	350	350	350	350	305	305	307	425	1,150	435	505
기본재산 증식	150	150	150	150	105	105	107	105	830*	105	175
고등학생 장학금	200	200	200	200	200	200	200	320	320	330	330

* 2018년 기본재산증식 내역 : 시금고 협력사업 105백만원 +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725백만원

3. 출연금 사용계획

① 기본재산 증식(장학사업비)

- 목 적: 2026년도 (재) 백운장학회 장학사업(장학금) 추진
- 출연금액: 150,000천원
- (재)백운장학회 2026년 주요 사업계획(안)
 - 사업재원: 기금운용(이자)수익, 광양시 출연금, 시민, 기업 기부금 등
 - 사업규모: 장학금 517명, 747,600천원

(단위: 명, 천원)

구 분	선발분야	인원	예산액	
합계		517	747,600	
대 학 생	우선선발	등록장애인	2	5,000
		이공계전공	4	10,000
		전문대학	3	4,500
		다자녀	30	75,000
		독립유공자 후손	5	12,500
	일반선발	성적우수	74	210,000
		학업지원	46	140,000
	관내 대학 장학금		50	70,000
	만학도 장학금		3	1,500
	저소득 우수학생 가계지원 장학금		30	30,000
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		5	5,000	
대학원생		20	50,000	
유 학 생		2	5,000	
초·중·고	특기(학술, 기능, 예체능)	40	30,000	
	선행·다문화	18	9,000	
	다자녀가정	50	28,000	
	북한이탈주민	9	4,500	
	향우자녀	9	4,500	
	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	10	7,000	
	지정기탁(광양경찰서, 광양소방서)	12	18,000	
	특기지도 우수학교	7	10,500	
	저소득 주민자녀	88	17,600	

②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

- 목 적: 성적 우수자, 모범·특기 학생 등 지역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- 출연금액: 200,000천원
- 선발대상: 광양시에 주소를 둔 관내 9개* 고등학교 재학생
* 일반고(인문계) 6, 특성화 2, 특목고 1
- 선발분야: 2개 분야
 - (성적우수학생) 전국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
 - (학교장 추천) 성적 향상자, 모범생, 예·체·기능 분야
- 선발방법 : 학교장 추천
- 지 급 액 : 20만원~30만원/1인
- 지급시기 : (상반기) 7월, (하반기) 11월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「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 제5조

제5조(재산의 조성) ① 제4조에 따른 장학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광양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출연금
2. 개인, 법인·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
3. 기금운영의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